

서울고등법원 2021. 9. 16 선고 2021나2018281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항소인 별지 1 원고 목록 기재와 같다.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민 담당변호사 채은혜

피고,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병희

변 론 종 결 2021. 8. 26.

판 결 선 고 2021. 9. 16.

제1 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4. 23. 선고 2020가합521909 판결

주 문

1. 원고들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B이 2017. 9. 8. 피고에게 한 액면금 294,300,000원, 수취인 피고, 발행지 및 지급지 각 서울특별시, 발행일 2017. 9. 6. 지급기일 2017. 9. 15.로 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의 발행행위를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C, D, E, F에게 294,300,000원, 원고 G에게 289,958,900원, 원고 H에게 237,071,900원, 원고 I, J에게 200,000,000원, 원고 K에게 124,218,360원, 원고 L에게 102,000,000원, 원고 M, N, O, P, Q, R에게 100,000,000원, 원고

S에게 93,100,000원, 원고 T에게 81,000,000원, 원고 U에게 80,000,000원, 원고 V, W에게 50,000,000원, 원고 X에게 40,000,000원, 원고 Y, Z에게 30,000,000원, 원고 AA에게 15,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심 및 당심에서의 원고들의 주장 및 제출된 증거들을 면밀히 살펴보아도 제1심에서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 내지 3항 기재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7면 제19행부터 제20행까지의 “피고 등 위 네 사람은”을 “피고 등 위 네 사람(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은”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12면 제1행의 “그러나”부터 제8행까지의 기재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AM이 2017.

6. 12. 수원서부경찰서로부터 계좌 이용정지 요청 공문을 받고 같은 날 B의 예금계좌에 대하여 지급정지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의2에 위반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지급정지가 되어야 하고, 같은 법 제4조는 수사기관으로부터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 즉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자의 자금이 송금·이체된 계좌 등으로 의심된다는 정보의 제공이 있을 것을 전제로 한다.1) 그런데, 수원서부경찰서의 2020. 11. 23.자 및 2020. 12. 14.자 각 사실조회회신서에 의하더라도 수원서부경찰서가 AM에 보낸 2017. 6. 12.자 공문에는 ‘범죄 관련 예금에 대한 수사등록을 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었고, 그 후에 보낸 2017. 9. 27.자 공문에도 요청사유로 ‘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득하지 않은 업체에서 투자원금을 보장하고, 확정 이자를

지급한다며 투자금을 모집하여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사기 혐의로 수사 중임'이라는 기재가 있을 뿐이어서, 위 2차례의 공문 내용 어디에도 위 계좌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사기이용계좌로 의심된다는 점을 추단할 수 있는 기재가 없고, 오히려 AM의 2020. 12. 3.자 금융거래정보회신서에 따르면 위 2017. 6. 12.자 지급정지는 전기통신금융사기와 관련된 범죄신고로 인한 것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서 정한 '전기통신금융사기'는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공갈할 것을 그 요건으로 하는데, B의 위 사기범행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실제로 B에 대한 형사절차에서도 B이 투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보장해주겠다고 약속함으로써 기망행위를 한 것이라고 인정되었을 뿐,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된 것이 아니다. 따라서 AM의 위 지급정지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에 따라 이루어진 지급정지가 아니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⑦ 또한 원고들은 B이 실제로는 2017. 9. 18.에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하면서 발행일을 2017. 9. 6.로 소급하여 기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갑 제36호증의 2(공정증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일이 2017. 9. 6.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약속어음도 같은 날인 2017. 9. 6.에 작성된 것임이 분명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들의 각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우수, 판사 조영철, 판사 김흥준

별지 1

원고 목록

1. C
2. D
3. E
4. F
5. G
6. H
7. I²⁾
8. J
9. K
10. L
11. M
12. N
13. O
14. P
15. Q
16. R
17. S
18. T

2) 소장의 당사자 표시 부분에는 'AT'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소장 별지 1 원고들 명단, 제1심 판결문 별지 3 원고들 피해내역 및 금액 부분의 각 기재에 비추어, 위 'AT'은 'I'의 오타임이 명백하다.

19. U

20. V

21. W

22. X

23. Y

24. Z

25. AA

끝.

별지 2

관련 법령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정의)

1. "전기통신"이라 함은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말한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2.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欺罔)·공갈(恐囑)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되,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한다.

가. 자금을 송금·이체하도록 하는 행위

나.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이체하는 행위

- 2의2. "전자금융거래"란 금융회사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가 금융회사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한다.

3. "피해자"란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자를 말한다.

4. "사기이용계좌"란 피해자의 자금이 송금·이체된 계좌 및 해당 계좌로부터 자금의 이전에 이용된 계좌를 말한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지급정지)

① 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거래내역 등의 확인을 통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즉시 해당 사기이용계좌의 전부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 수사기관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 등으로부터 사기이용계좌로 의심된다는 정보제공이 있는 경우

② 금융회사는 제1항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를 한 경우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해당 지급정지 조치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의2(지급정지 이후 압류 금지 등)

누구든지 제4조에 따라 지급정지가 된 사기이용계좌의 채권 전부 또는 일부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제8조에 따라 지급정지가 종료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등의 제기
2.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신청
3.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절차의 개시
4. 질권(質權)의 설정

1) 별지 2 관련 법령 참고